



## 손해 보험 (Property&Casualty Insurance)

### 주택보험 (Homeowner's Insurance)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움, 별장 외에 모빌 홈, 또는 트레일러 홈의 경우가 있다. 남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Dwelling Fire (DF)를, 남에게 세를 들고 있는 경우는 Renter's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 또는 소유물을 보호 할 수 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본 건물, 기타 건축물, 주택 내 개인 소유물)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본 건물 (Dwelling)은 화재 및 기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년도, 건축 유형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와 변동되는 건축관련 법규를 위한 조례(Building Ordinance) 등의 조항(Endorsement)에 가입함이 권고 되어진다.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은 주로 부속 건물을 지칭하며 차고, 수영장, Patio, Guest House 등을 이른다. 주택 내 개인 소유물은 보통 본건물의 50%, 또는 필요에 따라 추가 가입을 한다. 주거지 사용불능으로 인한 주거비용(Loss of Use) 조항은 재난으로 집을 쓰지 못하는 동안 임시로 필요한 호텔 비, 식비, 생필품 구입비등을 보상해 준다.

개인 보상(Personal Liability)조항은 직계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상해를 보상하여 주는 조항이다. 의료비용 (Medical Payment)은 Guest Medical 이라고도 하며, 방문한 손님이 집 또는 건물 내에서 당한 사고를 치료하는데 대한 의료비용으로 역시 가입자와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 개인 자동차 보험 (Personal Auto Insurance)

이 곳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험이 없는 운전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으니 적당한 가격에서 신용 있는 회사, 클레임 처리 능력, 관계된 가입 조건 등을 따져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겠다. 1997년 1월부터 교통사고나 교통 위반 시, 차량등록증 갱신 시, 경찰의 요구 시 등에는 자동차 보험을 제시해야만 한다. 위반 시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기도 하며, 이때 DMV에서 요구하는 액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벌금을 지불해야만 운전면허를 복구시킬 수 있다. 만일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SR-22, 또는 SR-1P 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년 동안 DMV의 감독하에 있게 된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Bodily Injury(BI):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
- Property Damage(P.D): 가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상
- Medical Payment: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
- Uninsured Motorist(UM):
  -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UMBI)*: 무보험 자에 대한 보험 가입인과 동승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
  -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UMPD)*: 무보험 자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
- Collision: 사고 시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또는 현재 시가에 대한 보상
- Comprehensive: 화재 또는 도난의 경우 본인 부담액(deductible)을 초과한 피해액, 또는 현재 자동차 시세에 대한 보상

그 외에 Towing, Rent Car 조항들이 있다.

이때, 주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동차 책임보험은 한 사람당 \$15,000, 한 사건당 \$30,000이며, 상대방 재산피해 보상금액은 \$5,000 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항상 대형사고를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혜택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운전기록, 연간 주행기록, 운전 경력, 거주지 zip code 등이며, 그 외 차종, 흡연/비 흡연 여부, 가입된 운전자의 사용비율, 학업성적, 자동차수, 미혼/기혼 여부, 사고 빈도 및 심각성 등이 고려 되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가주 내 모든 자동차 보험회사가 할당제로 판매하는 주정부 보험은 최소한의 보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며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은행의 용자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커버리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용자 시에는 은행을 보험증서에 Lien Holder 로 명시해야만 한다. 많이 사용하는 Lease 방법은 갖추어야 하는 보험의 요건이 한 사람당 \$100,000, 사건당 \$300,000, 재산상의 피해도 \$50,000 이 되어야 하며 본인

부담액(Deductible) 역시 대부분 \$500 미만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리스회사 역시 은행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

## 상업용 재산보험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보험의 규정과 커버 대상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나, 본 항에서는 상업용 재산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건물의 주인(Landlord)은 주인으로서, 입주자(Tenant)는 입주자로서 각자의 소유권하의 건물과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대개 입주계약서(Lease Agreement)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건물 주인이 건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일반적인 상업용 재산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건물 (Building)
- 비즈니스 중단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건축 공사기간 중 위험부담 보험 (Builder's Risk Coverage)
- 건물 조례 보상 보험 (Building Ordinance Coverage)
- 파손 물 제거 보상보험 (Debris Removal Coverage)
- 유리 보상보험 (Glass Coverage)
- 임대수입 및 가치 손실을 위한 보험 (Leasehold Interest Insurance)
- 개인 소유재산 보상 보험 (Commercial Personal Property)

### 1. 건물 (Building)

**실제 현찰 가격(Actual Cash Value):** 파손 당시의 건물 시세에 따른 피해 보상액의 지급 안으로 이는 파손된 건물의 실제 시세에서 그간의 감가 상각비를 제한 가격을 이른다.

**복구 보상가격(Replacement Value):** 실제적으로 보수 공사에 소요된 보수 공사비 일체를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보수 공사비에서 제하지 않는다.

**공동부담(Coinsurance):** 비즈니스 보험에 항상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80%, 90%, 또는 100%로 명시되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몫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50%, 40%까지 하향 선택할 수도 있다 (Agreed Value). 예를 들어 80% Coinsurance 의 한 경우, 보상한도액이 \$40,000 이고, 당시 건물 가격이 100,000 이며, \$10,000 의 손실이 생겼을 때 다음의 공식에 따라 \$5,000 을 보상받게 된다.

실제 보험 가입 가격

----- X

손실액 = 지급액

보험가입 시 건물 감정 가격 X coinsurance %

즉,

\$40,000

----- X \$10,000 (손실액) = \$5,000

\$100,000 X 80%

그렇다면, 여러 손실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 보상이 되는가를 알아보자.

Basic Form: 화재(Fire), 번개(Lightning), 폭발(Explosion-Non explosion of a steam boiler), 폭풍우 또는 우박(Windstorm or hail), 연기 (Smoke), 항공기나 자동차(Aircraft or Vehicles), 폭동이나 내란 (Riot or Civil Commotion), 파괴, 만행(Vandalism), 자동 소화 장치의 누수(Sprinkler Leakage), 건물아래 빈 공간이나 굴이 내려 앉아 생기는 피해(Sinkhole Collapse), 화산피해(Volcanic Action)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Broad Form: Basic Form 의 11 가지 외에 다음의 4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한다. 유리 파손(Breakage of Glass), 나무 또는 전봇대가 넘어져서 생기는 건물의 피해 (Falling Objects), 눈, 얼음, 진눈깨비의 무게로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는 경우 (Weight of snow, ice, or sleet), 물로 인한 피해(Water Damage).

Special Form: Basic Form 과 Broad Form 모두를 포함하며 보험 증서에서 제외 된 조항(Exclusion)을 제외한 모두를 보상해 주는 Form 으로 다소 비싸기는 하여도 그만큼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이다. 특히 도난 (Theft)조항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제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조례(Building Ordinance), 핵위험물(Nuclear Hazard), 지각 변동, 지진(Earth Movement, Earthquake), 전력 중단(Power Failure), 정부조치(Governmental Action), 홍수, 진흙사태(Water Flood, Mudslide), 전쟁, 군사행동(War, Military Action), 스팀, 보일러(Steam Boiler).

## 2. 비지네스 중단보험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영업 중단으로 인해 입은 비지네스상의 손실과 중단된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세금, 임대료, 기타 비용과 그 기간 중의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순소득을 보상.

## 3. 공사기간 중 위험 부담 보험 (Builders Risk Coverage)

건축물의 공사 기간 중에는 Builders Risk Coverage 를 이용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한 혜택이 지속된다.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보험은 자동 해약된다. 건물주, 공사 시공업주 및 부속업주, 건물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를 위해 마련하는 계약이다.

#### 4. 건물조례 보상보험 (Building Ordinance Coverage)

해당되는 건물 조례에 따라 철거를 하고 신축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손상 정도가 특정한도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 5. 파손 물 제거 보상 보험 (Debris Removal Coverage)

보험증서에서 정의하는 재난으로 인해 생긴 파손 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조항이다. .

#### 6. 유리 보상보험 (Glass Coverage)

화학 물질 발화로 인한 사고 또는 고의적인 사고로 추정된다 하여도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조항이다.

#### 7. 임대 수입 및 가치 손실을 위한 보험 (Leasehold Interest Insurance)

재난으로 인해 임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준다.

#### 8. 개인 소유재산 보상보험 (Commercial Personal Property)

비지네스에 필요한 보험 가입자 개인 소유의 가구, 시설물, 기계장비 등의 모든 내용물(Contents)이 포함된다. 입주자가 보수, 향상시킨 부분(Tenant's Improvements and Betterments)도 속한다. 가입자의 재산 외에 가입자의 보관 관리하에 있는 타인들의 재산(Personal Property of Others)도 포함 될 수 있다.

## 상업용 책임배상 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비지네스를 운영하면서 야기되는 책임배상의 이해관계는 법적인 차원에까지 연계되는 다양성과 복잡성만큼 그 조건과 규정이 다양하다.

### 1. 일반적인 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 Premises and Operations

모든 기업이나 업소는 사업장소 안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아닌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예로 제 3 자가 사업장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업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종업원인 경우는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 - 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재산상의 피해 보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명예훼손, 허위, 또는 악성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 - Fire Legal Liability

보험 가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해 있던 주변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여기에는 건물주가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 - Medical Payment

보험 가입 장소에서 제 3 자가 다쳤을 경우 응급치료비용을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 2. 추가보험 (Umbrella Liability)

비즈니스의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의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키 위해 책임 보상의 한계를 확대 시키는 보험으로 평소에는 쓰지 않는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다. 일반 책임보험의 요율에 비해 보험료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이 근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인컴 및 유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법이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보험이다. 만일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되거나 적발될 경우 벌금, 경고, 종업원 고용금지, 영업정지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품제조 또는 서비스 마련에 해당되는 비용 (cost) 에 이 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종업원 상해 보험규정에는 명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 규정의 목적은 복잡하고 막대한 경비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정 소송을 피하고,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를 당한 종업원에게 효과적이고 최단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종업원 상해보험은 독일 (1884년) 그리고 영국 (1897년) 에 법령화된 후, 미국에서는 20세기에 갖 들어서면서 모든 주에서 의무화하였다.

### ■ 종업원 상해보험 법령의 기본 원칙

다음의 5가지를 토대로 한 원칙 하에 종업원 상해보험 법령이 적용된다.

#### 1. 종업원의 부주의는 책임의 한계에 포함이 안 된다.

일반적인 책임과 관련된 타인에 끼친 손해는 관련인의 부주의 또는 실책으로 책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법령에는 이런 원칙이 예외가 된다. 즉, 근무 중에 비롯된 원인 및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종업원의 상해, 부상 또는 사망의 경우는 고용인 또는 고용 회사의 책임으로 돌린다. 따라서 손해의 정도, 기간에 따라 종업원에게 부여되는 보상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2. 보상은 부분적인 보상금이며 최종 합의사항이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금에 비해 상당히 적을 수 있으므로 부분적인 보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받는 보상금은 발생한 모든 내용에 최종 합의되는 사항으로 처리가 됨으로, 종업원은 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 또 다른 법적 소송의 권한을 포기하게 된다.

#### 3. 정기적인 보상금 지불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의 가능한 오랜 기간에 걸친 혜택을 위해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일시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는 정기적인 보상금의 형태로 지불한다. 이는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무분별한



또는 무책임한 낭비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4. 상해보험의 경비는 제조 경비에 포함된다.

다른 여는 책임보험의 경비 산출 방식과 달리, 종업원 상해보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업원에게 따로 부과 되지 않는다. 고용주 측에선 반드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법령화된 내용대로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추정하여 상품 제조비용에 일부로 감안하여 또는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경비에 일부로 포함하여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이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고 본다.

#### 5. 종업원 상해보험은 의무적이다.

모든 고용주 또는 비지네스 운영 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현재 44 개 주에는 벌 금(25 불에서 5 만 불까지), 구금 또는 양쪽의 내용이 적용된다.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영업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 보상의 종류

#### 1. Medical Benefit (치료비 보상)

이 보상 내용은 상해보상액의 40%에 해당되는 의사 진료비, 병원비 및 그 외 치료비를 보상한다. 주마다 이 비용에 해당되는 경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비용 지출한계를 대부분 미리 설정하고 있다.

#### 2. Disability Benefit (불구 시 보상)

취업불능의 상태인 불구 (disability) 시에 주급 보상 의 경우, 해당 종업원은 주급의 66 2/3 %를 받게 된다. 일시적인 불구의 경우는 3 일 (waiting period) 이후부터 주당 최고 448 불, 최소 126 불이 보상 가능하며, 영구적인 불구의 경우는 최고 198 불까지 보상된다.

#### 3. Survivors' Death Benefit (유가족 사망 보상)

장례비 및 기타 사망시의 보상금으로 장례비의 경우는 5 천불,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15,000 불, 자녀 수에 따라 150,000 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 4. Rehabilitation Benefit (재활 교육)

모든 주에서 재활 혜택을 제공하며, 재활 시 소요 되는 치료, 직업교육, 휠체어 같은 의료기구, 제반 여행경비 및 지출비가 포함된다.

\* 위의 보상액수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 ■ 고용주의 Claim 방법

1. Employee's Claim Form (DWC) 을 고용인 및 고용주가 같이 작성하여 1 매는 고용인이, 1 매는 보험회사로 제출한다.
2. Employer's Report of Occupational Injury or Illness (Form 5020) 양식을 고용주가 작성하여 2 장을 보험회사 또는 Agent 에 5 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한다.
3. 의사 및 병원 선택은 고용인의 자유 선택이나, 보험 회사에서 추천하는 의사 또는 병원을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 ■ 보험료 책정 방법

1995 년 1 월 1 일 이전에는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Inspection Rating Bureau (WCIRB) 의 지침 보험료 비율을 모든 보험 회사에서 함께 사용하고, 보험회사는 그들의 보험 고객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배당금계약이 끝난 후 일반적으로 12 ~ 24 개월이 걸쳐 산출된다.

1995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Manual of Rule' 을 폐기하고 소위 'Open Rating System'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회사마다 고유의 Manual 을 보험국에 등록할 수 있고, Manual 은 Rule, Classification 과 Rating 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Open Rating System' 하에서 Experience Rating Mode 는 계속 허용되고 있으며, 지난 3 년간의 보험 기록을 새로 갱신되는 계약에 반영이 가능하나 실제적인 반영은 신규 계약 후 4 년 9 개월이 지나야 산출이 된다. 예를 들어 '95 년 10 월 1 일에 시작된 어느 회사의 보험 클레임 경험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91 년 1 월 1 일부터 93 년 12 월 31 일이다. 그러나 3 년이 지난 뒤 바로 이 Mode 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전해의 클레임이 있었을 경우 아직 클레임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가장 최근의 클레임에 대한 경험에만 의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보험료는 최소 지난 3 년간의 보험료 지불금액이 \$14,100 을 넘어야 적용이 된다. (1995 년 기준)

#### ■ 기타 알아두어야 할 종업원 상해보험 내용

1. 종업원 상해보험은 증서에 명시된 주에서만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2. 불법적으로 고용한 종업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유사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 따위는 보상되지 않는다.
3.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도 보험 회사에 'Foreign Coverage Endorsement'를 미리 요청하여 첨가한 후, 유사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 종업원 상해보험은 'Audit Policy' 즉, 보험료의 최종 산정이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종업원 에 대한 급여 (payroll) 총액에 따라 변동된다. 1년 후의 정확한 급여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지불 예상한 급여의 총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지불한 뒤, 1년 후 정확한 급여를 산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급여가 많아졌으면 보험료를 더 지불하여야 하고, 급여가 적어졌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 반환 (refund)도 받게 된다.
5. 지난 90일 동안 52시간의 근무를 하였거나, 100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모든 종업원은 법에 따라 반드시 상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거의 모든 part-time 직원까지도 포함이 된다.
6. General Contractor의 경우 하청을 주는 업체로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의 증서를 계약 시 요구할 수 있다. 주법상 이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하청업자가 보험이 없었을 경우 발생한 피해보상은 General Contractor가 책임을 가져야 하며, 또한 하청업자의 급여 (payroll)에 대한 보험료까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7.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이 된 비지네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inspection)를 수시로 할 수 있다. 보험료 산출과 추정되는 손해 발생여부(Loss Control)의 목적으로 급여장부 (payroll record)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안전에 대한 검사는 아님으로 근무장소의 안전도, 위생환경 및 법에 저촉을 받는 여부와는 무관하다.
8.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Job Classification (비지네스 종목) Manual Rate (비지네스 종목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이 되며, 보험회사는 여기에 대한 근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비지네스 종목에 따라 보험회사마다 보험율이 정해져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예를 들어 건축 또는 지붕설치 공사자동) 직업에 높은 비율이 적용되고, 위험도가 낮은 직종 (예, 사무직)에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기본 보험료는 100불당 그 직종의 해당 비율 (manual rate)을 곱한 숫자로 결정된다.
9. Payroll record의 사항으로는 gross wages (총 급여 지불 금), salaries (월급), commissions (커미션), bonuses (보너스), vacation (휴가비), holiday & sick pay, overtime pay (과외 수당) 등의 기록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초과 지급급여)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에 시간당 급여가 10불이고,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불을 받는 경우, overtime에 대한 초과 급여인 시간당 5불은 payroll 기록에서 제외된다.

## 상업용 자동차 보험 (Commercial Auto Insurance)

개인 명의의 비지네스 즉, 자영업의 경우에는 몇몇 업종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 하에 상업용 차량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법적 구성이 동업 (Partnership) 혹은 법인체 (Corporation) 일 경우의 상업용 차량은 개인 자동차 보험에 포함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승용차, 트럭, 트레일러 등이 상업용 차량에 포함이 된다. 이런 차량에 대한 보험은 단일 보험계약 (Monoline Auto Policy) 또는 다른 비지네스 보험의 한 일부로 패키지상으로 보험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상업용 차량 보험의 경우 책임보상 (Liability), 의료비용 (Medical Payments), 차체 보상 (Physical Damage), 무보험 차량 보상보험 (Uninsured Motorist)으로 구분하여 마련된다. 먼저, 상업용 차량보험의 정의 하에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차량의 종류 및 범위를 알아본다.

### ■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차량 (Covered Auto)

상업용 차량 보험의 전례를 보면 다음의 3 가지 구분으로 첫째, 소유 차량 (Owned Autos), 둘째 임대차 (Hired Autos), 셋째로 비 소유 차량 (Non-owned Autos)을 명시하였다. 임대 차량이란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제외한 업주가 소유하지 않은 임대 즉, 렌트 차량, 임시로 빌린 차량 등을 일컫는다. 비 소유 차량이란 종업원으로부터 빌린 차량, 렌트 차량, 리스 차량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차량의 구분에 대한 가장 쉬운 차이는 종업원이 소유권을 가진 차량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단지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는 보험료 책정상의 절차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차량이란 총괄적이고 넓은 범위에 보험혜택 한도를 얻는다. 즉, 업주소유의 차량, 임대 차량 그리고 비 소유 차량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상에서 비롯되는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사고 차량의 보수기간에 필요한 대체용 차량마련, 또는 차량의 완전손해 (Total Loss)로 인한 새로운 차량의 구입 등등에 필요한 모든 제반 보상 혜택을 포함한 규정을 포함한다.

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규정상 (Business Auto Coverage) 일반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9 개의 번호로서 보험 대상의 차량을 구분하여 차량에 대한 보상한도를 구분하고 정의한다.

#### 1. Symbol 1 (Any Auto)

가장 광범위한 책임 보상한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자동차 일람표에 기록된 차량은 물론 차후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 고용에 의한 빌리거나 리스를 한 차, 그리고 사업체 이름으로 소유 되 있지는 않지만 종업원이 운전하는 차량도 포함한다. 임대 차량, 비 소유 차량을 위한 보험이 필요 할 때는 따로 소정의 보험료를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 Symbol 을 선택하면 책임보험 한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해 차를 수선하기 위해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그 기간에 사용하는 렌트 차량도 혜택을 받는다. 주의 해 야할 사항은 만일 회사가 동업 (Partnership) 인 경우, 동업자의 차량을 회사에서 사업상 사용한다면 그 차량은 회사의 차가 아니더라도 추가규정 (Endorsement)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보험의 비

소유 차량 조항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추가규정이 없으면 동업자의 차량이 사업상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 (Personal Auto Policy)의 책임 보상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보험으로는 혜택이 없다. 회사는 동업자의 개인 보험에 포함된 피보험자 (Insured)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동업자의 개인보험 의 보상한도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비 소유 차량 혜택 (Non-owned Coverage)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 2. Symbol 2 (Owned Autos Only)

Owned Auto란 피 보험자가 소유한 모든 차량의 소유권이나 관리, 사용 목적에 따라 발생 하는 책임 보상한도를 말한다.

## 3. Symbol 3 (Owned Private Passengers Autos Only)

Symbol 2 의 보상제도와 비슷하나 차량마다 다른 보상제도를 마련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에는 충돌피해 (Collision) 조항이나 의료비 보상 (Medical Payments) 을 가입하고 트럭에서는 제외시킨다.

## 4. Symbol 4 (Owned Autos other than Private Passenger)

상업용 차량을 개인 승용차와 다른 보상제도를 마련할 때 사용한다.

## 5. Symbol 5 (Owned Autos subject to Non-Fault)

대부분의 주정 부는 자동차 사고 시 발행하는 인명 피해에 대한 의료비, 불구로 인한 수입까지 자기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은 특정한 주에서 인명 피해 사고 보상에 대해 자기보험을 통하여 청구하도록 규정된 주에서 사용된다.

## 6. Symbol 6 (Owned Autos subject to compulsory Uninsured Motorist Law)

어떤 주 에서는 무보험 자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즉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을 구입할 때 무보험자에 대한 피해 보상조항을 같이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 7. Symbol 7 (Specifically described Autos)

보험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차만 보상해 주는 조항이며, 피보험자가 추후에 따로 구입하는 차량이나 기존 차량을 빼고, 다른 차를 추가하는 경우 30 일 이내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8. Symbol 8 (Hired Autos Only)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고용인, 동업자, 가족의 경우가 아닌 임대 계약된 차, 빌린 차(Hired Autos)를 위한 책임보험을 마련할 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차체보상(Physical Damage)은 없으며, 단지 책임보험(Liability)만 보상된다.

#### 9. Symbol 9 (Non-Owned Autos Only)

이 조항은 종업원이 있는 업체는 특히 이 조항에 가입 되도록 권한다. 대다수 소규모업체들의 경우는 회사 명의의 차가 없으므로 상업용 차량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들이 개인 자동차보험만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종업원이 업무상 종업원의 차를 이용하게 된 경우 차 사고가 생기면, 먼저 종업원의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청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보상 액이 부족한 경우, 회사의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비 소유 차량 책임보험 (Non-Owned Auto Liability Coverage)이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를 보상한다. 그러나 조항 8 과 조항 9 의 경우는 조항 1(Any Auto)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 ■ 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혜택 (Coverage for Business Auto)

가입 대상차량의 보상 한계가 여러 구분된 조항 (Symbol)으로 결정되듯, 보상의 범위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 보상의 범위에는 책임보험 (Liability), 인명 피해보상 (Personal Injury Protection or similar No-fault Coverage), 추가인명 피해보상 (Added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의료비 보상 (Medical Payments), 무 보험자 피해보상 (Uninsured Motorists), 불충분 보상한계 보험자 (Underinsured Motorists), 차체 배상보험 (Physical Damage) 등 7 가지가 있다.

#### 1. Liability (책임보험)

가입된 차량의 관리 또는 운행 중에 보험 가입자의 잘못으로 타인과 발생하는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 2.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인명 피해보상)

비즈니스 차량보험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즉 의료비 외에도 피해자의 고정적인 수입, 장례비 또는 피해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한 조항이 추가로 요구된다. 많은 주정 부에서는 'No-Fault'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자기 자신의 보험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 3. Added Personal Injury Protection (추가 인명 피해보상)

기본 인명 피해보상 조항에 제한된 보상 액이 일반적으로 제한된 까닭에 더 높은 보상한계 액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추가 조항은 각 주정부의 보험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다.

#### 4. Auto Medical Payments (의료비 보상)

사고발생시 보험 계약에 책정한 한도내의 의료비용 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종업원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다치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보상 조항은 사용 할 수가 없다. 물론 고용주가 운전한 경우나 그의 가족, 친구들이 운전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므로 이때는 의료비 보상조항 가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 5. Uninsured Motorists (무 보험자 피해보상)

무보험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가입자 손실에 대한 보상이 지불 불가능 할 때 가입자의 보험 규정 하에 보상을 받는 조항이다. 이 조항도 전자의 의료비 보상 규정 (Medical Payment)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에 해당되는 경우는 같은 조항으로 적용된다.

#### 6. Underinsured Motorists (불충분 보상한계 보험자)

무 보험자에 의한 피해 보상과는 달리 보험은 있어도 보상한도액이 너무 적을 경우 이 조항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그 차액을 본인의 보험회사로부터 청구 받을 수 있다.

#### 7. Physical Damage (차체 보상보험)

일반적인 차체 보상보험 조항은 아래의 3 가지가 있다.

- i) Collision Coverage: 충돌로 인한 사고 보상
- ii) Comprehensive Coverage: 충돌과 기계적인 고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손해를 보상
- iii) Specified Perils Coverage: (나)의 조항은 충돌과 기계적인 고장을 제외하고 모든 손해 및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본 조항은 증서에 계약된 특별한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나) 조항 보상 내용의 다른 옵션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의 유리가 깨진 경우 (나) 조항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가입 차량이 너무 오래된 경우 보험료가 높을 수 있음을 감안 하여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신 사용된다. 본 조항에서는 화재, 폭발, 도난 또는 파괴, 홍수, 지진 등의 보상 항목을 포함한다.

#### ■ 보험료 산정기준 (Rating Factors)

보험료 를 산정키 위한 기준은 첫째, 비지네스로부터 거리상의 반경 즉,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주행 거리 반경 (Radius), 둘째로는 사용용도 (Use), 셋째로 차량 무게 (Gross Vehicle Weight)이다. 차체 보상보험 (Physical Damage) 의 경우는 이런 기준 외에도 차를 처음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이 중요기준이 된다.

##### 1. 반경 (Radius)

일반적인 보험 차량은 차고로부터 50 마일 이내를 운행하는 단거리, 51 마일에서 200 마일까지의 중거리, 그리고 200 마일 이상의 장거리로 분류한다.

단거리 주행의 경우는 보험 회사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상시 운행 거리의 80%가 50 마일 이내를 기준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1 주일에 한번 정도는 50 마일을 벗어난 단순 운행을 허락한다.

## 2. 사용용도 (Use)

다음의 3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 i) 서비스 차량 (Service Use):

서비스차량은 작업장까지 운행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작업장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연관 공 (Plumber) 또는 전기기술자 처럼 하루의 작업장 방문이 단 몇 번으로 제한되는 경우다.

### ii) 소매업 차량 (Retail Use):

보험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는 경우이며, 차량 사용 용도가 물건 또는 기타 상품 의 픽업 또는 배달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픽업이나 배달이 일반 가정 집으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업체만을 운행하는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업체를 운행하는 경우는 비즈니스 용도로 규정짓게 된다.

### iii) 비즈니스 차량 (Commercial Use):

보험료 수준이 서비스 차량 과 소매업 차량의 중간 정도가 되며, (i)과 (ii) 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차량은 여기에 속한다.

## 3. 차량 무게 (Gross Vehicle Weight)

적재 시 차량 무게가 무거울수록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크다. 그래서 기준은 10,000 파운드 미만은 “Light Truck”, 10,001 파운드부터 20,000 파운드 까지를 “Medium Truck”, 그리고 20,000 파운드 이상을 “Heavy Truck” 으로 구분한다.

## 4. 새 차 구입 가격 (Purchase Price)

이 경우는 차체 보상보험의 경우 “Collision Coverage” 와 “Comprehensive Coverage” 의 보험료를 산출 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격의 구별 기준은 대개 6 천불에서 8 천불, 8 천불에서 만불, 만 불에서 만 오천 불, 만 오천 불에서 2 만 불이며 2 만불 이상부터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많다.

비즈니스 차량, 예를 들어 중량급 이상의 트럭은 특수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압축 펌프, 수압 승강기(Hydraulic Lift Tail-gate) 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특수장비와 트럭 가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기타 어떤 장비가 부착되어 있는지도 명시해야 한다.





■ Garage Coverage & Garage keeper's Insurance

특별히 한글로 표기할 만한 용어가 없으나 역시 자동차와 관련된 독자적인 보험계약의 하나로 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 와 차체보험(Physical Damage Coverage) 을 함께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딜러, 자동차 수리 점, 공용 자동차 파킹장소, 기타 차량 관계 서비스 점 등의 영업장소에 보관, 진열 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 혜택을 마련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보관상에서 발생된 손실을 자동차 주인에게 배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라 하겠다. 또는 자동차 딜러의 쇼룸과 기타 장소에 진열된 상태에서 차체에 발생된 파손, 도난 등 자동차 딜러 측에 미친 손해를 대비할 수 있다.

## 본드 (Bonds)

본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전문업종이나 특별한 경우에 요구되는 보험상품으로 Surety (보증회사 혹은 obligator 라고도 함) 와 Principle (제 3 자를 위해 Bond 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회사), Oblige (Bond 의 혜택을 보는 제 3 자), 그리고 Indemnitor (Surety 의 손실과 그에 대한 비용을 변증하기로 보증하는 개인이나 회사 (Indemnitor 는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님)의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본드는 제 3 자에게 Principle 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보증회사 (Surety)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본드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본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서류들이 필요하다.

### ■ Bond 의 종류

#### 1. License and Permit Bond

이 본드는 개인들이 필요한 라이선스나 영업 허가서 (permit)를 받아서 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시 또는 카운티, 그리고 주정 부를 상대로 들어오는 클레임을 대비하기 위한 본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면허 업종은 건축업종의 영업 허가서, 이발소, 세탁소, 보험 대리인, 일반인을 위한 공증 사 (notary public) 의 면허, 허가 업종은 판매세 (sales tax), 개인주택의 driveway 의 포장 또는 보수 공사를 할 때 받는 공사 허가서 따위가 본드에 해당된다. 본드의 금액은 작게는 천불부터 5 천불이 대부분이었으나, 몇 년전부터 license bond 는 업종에 따라 2 천 5 백불 또는 만불까지 준비하도록 개정되었다. 본드는 License 나 Permit 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재정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된다.

#### 2. Court Fiduciary Bond

이 bond 는 개인이 재산권 (estate), 보호자 (guardian), 수취인 (receiver), 보관인 (trustee)의 관리자나 유언 집행자 (executor)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돈과 재산을 취급하도록 허가를 약속 받을 때 요구된다.

#### 3. Judicial Bond

법원에서 요구되는 본드로써 원고본드 (plaintiff's bond), 피고인 본드 (dependent bond)의 종류가 있으며, 원고나 피고는 법원의 판정에 따라 법정비용과 그 손실을 지불해야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는 본드를 요구하게 된다. 본드를 구입해야 할 원고나 피고는 경험이나 평판 또는 법정 상황에 따라 좋은 재정 상황을 갖추고 있어야 구입할 수 있으므로 발행 받기 힘든 본드중의 하나이다.

#### 4. Contract Bond

이 본드는 건축 공사자가 공사를 하기 위한 합의금액을 지키지 못할 때 책임을 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즉, 건축 공사자가 공사를 수주 받은 뒤 공사를 맡긴 측에서는 공사가 공정 기간에 끝날 수 있는지 또는 견적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적게 작업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차액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므로 부분적으로 공사가 끝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이때 본드가 부대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며, 본드 한계 액까지 지불함으로써 공사를 맡긴 시공자를 보호하게 된다. 실제로 시공자가 원하는 본드는 2 개이나 종종 한가지 본드만으로도 같이 묶어서 발행되기도 한다. 두가지중 첫째는 Performance Bond 이 고 이는 공사자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 일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보증하는 본드이고, 또 하나는 Payment Bond 로써 공사자 임금, 원자재 비용, 하청업자의 임금과 기타 관련비용 모두를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본드이다.

#### 5. Bid Bond

대부분의 건축업은 유자격 공사자가 공사를 수주 받기를 바라며 공개 입찰을 할 경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는 사람이나 업체에 낙찰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 특정한 날짜와 공사금액의 5%부터 20%사이 금액으로 특정 퍼센테이지, 대개는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입찰 액수 중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이때 이 금액을 보증하는 본드를 말한다

#### 6. 피델리티 본드 (Fidelity Bond)

종업원의 부정직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고용주에게 보상하는 본드이다.

#### ■ 본드를 구입하기 위한 서류와 자격

##### 1. Application

##### 2. Financial Statement (5 천불 미만의 본드, license 본드에는 필요치 않 음)

##### 3. 추가내용

- 비지네스 경력과 학력
- 전문성
- 현재 진행중인 비지네스 (공사 수주현황)
- 과거에 끝마쳤던 일
- 은행기록
- 거래처 기록

#### ■ 담보물 (Collateral)



본드를 구입할 때 많이 사용되며, 담보물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세이빙 구좌 저당권
2. 연방정부나 주정 부에서 발행한 채권
3. 우수회사의 증권이나 채권
4. 신용장 (Letter of Credit)
5. 생명보험하의 캐쉬밸류 또는 보험금
6. 집, 건물 문서 (Trust Deeds on Property)